

< 정기안전보건교육 안내 >

1.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법 제29조)

- ▶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2.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시행규칙 제26조)

- ▶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 ▶ 교육내용 (제26조1항 등 관련)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관리감독자
-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
-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
- ▶ 산업보건의
- ▶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 ▶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4. 교육방법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

- ①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 ② 현장교육을 실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
 -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의 작성
- ③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 제공(게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 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 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2분의 1매로 본다. 다만,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한다)
 - 별표2의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을 따를 것
- ④ 사업주는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시행규칙 제27조)

- ▶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6. 과태료 부과기준

세부사항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2차	3차
<u>정기적으로</u>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20만원	50만원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현장실습생의 경우는 현장실습을 최초로 실시할 때와 실습내용을 변경할 때를 말한다)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20만원	50만원
<u>유해하거나 위험한</u>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현장실습생의 경우는 현장실습을 실시할 때를 말한다)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250만원	500만원